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5.7.2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4조)

나. 공유재산 심의 생략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

-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전까지

라.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 제한(안 제17조)

- 총 무상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음

마.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안 제20조의2)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제기구 또는 단체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안 제22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안 제24조의2)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으로 이주하는 제조업체

아. 대부료 요율(안 제28조)

-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안 제32조)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 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100분의 30감면
-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100분의 30 감면

차.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 100분의 5 이상 증가

카. 대부료의 납부 중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삭제(안 제35조)

-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초과일 경우 분할 납부

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40조)

- 공유지 위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5년도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각
- 영 제38조제1항31호에 따라 제5호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제4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구체적인 규정을 권고 받았으나 상위법상 성별규정이 있어 미반영.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입법예고 : 2015. 9. 24. ~ 10. 14.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주군”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⑥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운영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다음연도 예산의결”을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한다.

제17조 중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13조제3항에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

2.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4.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5.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1조에 의하여”를 “제19조의2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성주군에서”를 “군에서”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 중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에서 제3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
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에서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에서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에서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2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한 중소기업자”를 “따른 중소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호의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제50조에서 제60조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제34조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삭제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③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신 설>	⑥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운영한다.
<신 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⑧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 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심의회의 ----------.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생 략)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신 설>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따라 ---------- ---------- ---------- ---------- ---------- ---------- ----------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제52조제2항에 따라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 2.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4.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5.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따라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따라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제19조의2에 의한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군에서 ----------.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 (생 략)	제22조의3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제25조에서 제37조까지 ----------.

<신 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 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따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초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제13조제9항 ---------- 제19조에 따라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어느 하나에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어느 하나에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어느 하나에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 따라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2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100분의 5이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따라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 따라 ----------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따라 ----------
1.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 따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 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에 따른 ---------- 에 따른 ---------- 따른 중소기업자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따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따라 ---------- .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 따라 ---------- 따라 ----------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 의 규정에 따른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따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따라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따른 ---------- ---------- 따라 ----------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 ---------- ------ 제50조에서 제60조까지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따른 ---------- ---------- 따라 ----------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 ---------- ------ 제50조에서 제60조까지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